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
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연구원을 설립 가능한 지자체의 인구 기준을 100만에서 50만으로 완화하고, 지방연구원의 인사·재무·연구실적 등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8850호, 2022. 4. 26. 공포, 10. 27. 시행)됨에 따라, 지방연구원을 설립 가능한 인구 기준을 법률과 같이 50만으로 조정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, 법률에서 위임한 지방연구원이 공시하여야 하는 재무 현황 등 세부적인 내용 및 지방연구원의 시기와 주기를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한 지자체 인구기준과 일치
(안 제2조제1항)

나. 법 위임사항인 재무 현황 및 그 밖에 지방연구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(안 제5조의2제1항)

- 1) 전년도에 재무상태표, 운영성과표 및 재무제표(주식 포함)
- 2) 전년도에 지방연구원의 기본 재산 현황

3) 전년도 지방연구원의 채무 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

다. 법 위임사항인 지방연구원 경영공시의 시기에 대한 규정(안 제5조의 2제2항)

- 1)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(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) :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
- 2) 전년도의 결산서(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) ,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(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) ,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(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) , 재무현황 및 지방연구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(법 제18조의2제1항제8호) : 전년도 결산서 제출 후 7일 이내
- 3) 경영평가의 결과(법 제18조의2제1항제5호) : 경영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
- 4)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·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(법 제18조의2제1항제6호) : 감사 결과 또는 이행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
- 5) 연구과제, 연구보고서 및 활용결과 등 연구실적(법 제18조의2제1항제7호) : 연구과제 또는 연구보고서 종료 후 1개월 이내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100”을 “50”으로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등)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전년도의 재무상태표, 운영성과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[주식(註釋)을 포함한다]
2. 전년도의 지방연구원의 기본재산 현황
3. 전년도의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의 사채 발행 또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현황
4. 전년도의 지방연구원의 채무 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

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사항: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
2.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: 법 제18조에 따라 전년도 결산서 제출 후 7일 이내

3. 법 18조의2제1항제5호의 사항: 경영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
4. 법 제18조2제1항제6호의 사항: 감사 결과 또는 이행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
5. 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사항: 연구과제 또는 연구보고서 종료 후 1개월 이내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) 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(이하 “지방연구원”이라 한다)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또는 인구(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) 100만 이상의 시(이하 “대도시”라 한다)별로 설립한다.	제2조(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50 ----- ----- -----.
②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② ~ ④ (현행과 같음) <u>제5조의2(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등)</u>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전년도의 재무상태표, 운영성과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[주석(註釋)을 포함한다] 2. 전년도의 지방연구원의 기본재산 현황 3. 전년도의 지방연구원의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

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사항: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

2.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: 법 제18조에 따라 전년도 결산서 제출 후 7일 이내

3. 법 제18조의2제1항제5호의 사항: 경영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

4. 법 제18조2제1항제6호의 사항: 감사 결과 또는 이행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

5. 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사항: 연구과제 또는 연구보고서 종료 후 1개월 이내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962